

교원국외여행에관한규정

1997.12.10.제정 2002.11.01.일부개정 2004.12.24.일부개정 2018.01.01.일부개정
2021.11.01.일부개정

<교무팀>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원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1.1.)

제 2 조(정의) 교원의 국외여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. (개정 2018.1.1.)

1. 연구년 기간 중의 해외연구 및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 의한 휴직
2. 국제적 기구나 외국기관의 지원에 의한 초청 및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기타 단체 등의 공무 위촉
3. 기타 사적 목적의 여행
4. 삭제 <2018.1.1.>

제 3 조 (여행기간) ①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은 관계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로 한다. (개정 2018.1.1.)

- ②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은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8.1.1.)
- ③ 제2조 제3호에 의한 7일 이상의 국외여행은 성적입력 마감이후부터 개강 1주일 전까지 허가할 원칙으로 하며, 연간(당해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) 통산하여 7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8.1.1.)

제 4 조 (허가신청) 제2조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 학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(개정 2018.1.1.,2021.11.1.)

1. 삭제 <2021.11.1.>

2. 초청장 또는 관련공문 사본
3. 국외여행 계획서
4. 국외여행자 직무대행표
5. 휴·보강계획서
6. 삭제 <2018.1.1.>

제 5 조(여행허가) 총장은 국외여행 신청자가 소속하고 있는 학과장 및 학장 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 및 학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. (개정 2018.1.1.)

제 6 조(기간연장)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기 국외여행자가 여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단, 여행기간연장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귀국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1.1.)

제 7 조(휴직) 삭제 <2016.3.1.>

제 8 조(허가의 취소) 교원이 국외여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그 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귀국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여행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본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(개정 2018.1.1.)

1. 국외여행기간 중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2. 이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과 여행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
3. 국외여행기간의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총장의 소환에 불응하였을 때
4. 삭제 <2018.1.1.>

제 9 조(급여) 삭제 <2016.3.1.>

제 10 조(여비보조) 삭제 <2016.3.1.>

제 11 조(의무) ①총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교원은 여행 목적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따른다. (개정 2018.1.1.)

②전항의 의무를 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행 중에 지급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1.1.)

③제2조 제3호에 의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교원은 귀국 후 5일 이내에 「교원출장및국외여행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. (개정 2018.1.1, 2021.11.1.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진행 중인 출장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제1호] (신설 2018.01.01.), 삭제 <2021.11.1.>